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46호, 96년 1월 18일)

개정이유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1995. 1. 5. 법률 제4919호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배치도, 1층 평면이 표시된 평면도, 입면도. 등 기본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각층의 평면도 · 입면도 및 단면도와 구조도 등 세부설계도서는 착공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도록 함(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4의2).

나. 건축공사에 수반되는 토지굴착공사로 인하여 가스 · 전기 · 통신, 상 · 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제14조제3항).

다. 피난계단 · 방화구획 · 굴뚝 · 방화벽 · 방화문 등의 구조에 관하여 규정함(제26조의3, 제28조의2,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1조의4).

라. 건축구조기술사외에 건축구조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건축구조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건축물의 구조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제1항).

〈건설교통부 제공〉

건축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의 제정 · 개정 또는 승인에 관한 사항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영 제9조제1항"을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으로, "시장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시장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법 제15조제1항의 듀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

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별표2의 기본설계도서(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에 한한다.

3. 법 제8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한다)

제7조 제1항중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방건축위원회"를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로, "영 제8조제2항 각호"를 "영 제8조제4항 각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중 "건축조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중 "영 제8조"를 "법 제14조"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6항중 "시장등은 제1항 내지 제5항"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으로,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증"을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한다.

1.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제13조제1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가설건축물신고증"을 "가설건축물신고필증"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건축신고"를 "축조신고"로 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별표4의2의 설계도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 제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용검사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 및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신청서와 이에따른 사용검사필증은"을 "사용승인신청서와 이에 따른 사용승인서는"으로, "사용검사신청서에는"을 "사용승인신청서에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중 "영 제17조 제1항"을 "영 제17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을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등)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도서의 관리)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단독주택과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건축물안에 고정식 도서보관함을 설치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도서를 말한다)

2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3.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의한 건축물유지·관리대장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들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 또는 현장관리인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일지·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영 제19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4. 공정표의 검토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확인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

부의 검토 · 확인

7.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 확인

8.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 확인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제1항중 "시장등에게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별지 제23호의5서식"으로, "건축사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검축물사용검사 및 검사조서"를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로 하고,동조제2항 본문중 "시장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사용검사신청서(이하 이 조에서는"신청서라 한다)"를 "사용승인신청서"로, "사용검사필증을"을 "사용승인서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중 "시장등"을 각각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단서중 "시장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26조의 3 및 제28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3(피난계단등의 구조) ① 영 제3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에 설치할 것.

마. 계단실의 옥내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것

바. 옥내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옥내로부터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 할 것

나. 계단실 · 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벽 및 반자로서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 및 부속실에는 채광이 될 수 있는 창문등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 · 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 · 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안쪽에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안쪽으로부터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층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방화구획의 구조)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것

2. 급수관 · 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시멘트모르터 기타 불연재료로 메울것

3. 환기 · 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것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2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영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 으로 한다.

제30조제3호중 "건설부장관"을"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의2내지 제3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 · 계단탑 · 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 · 계단탑 · 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 건축물의 지붕속 · 반자위 및 가장 아래 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회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28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의4(방화문의 구조)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골구를 철재로 하고 그 양면에 각각 두께 0.5밀리미터이상의 철판을 붙인 것

2.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이상인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②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을종방화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한다.

1.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0.8밀리미터이상 1.5밀리미터미만인 것

2. 철재 및 망이 들어있는 유리로 된 것

3. 골구를 방화목재로 하고, 옥내면에는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을, 옥외면에는 철판을 붙인 것

4,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립건설시험소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것

③방화문이 문틀 또는 다른 방화문과 접하는 부분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문을 달기 위한 철물은 그 방화문을 닫은 경우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제87호 · 제98조 내지 제101호"를 "제85호 · 제96호 및 제97호"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5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영 제91조의3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구조분야의 공학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건축구조분야의 공학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3. 건축기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건축구조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영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토목분야 기술자격취득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 · 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3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시장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한다.

제38조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의 시정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청문절차)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사유 및 일시 · 장소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 기타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3조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분쟁조정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4.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6. 신청연월일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제1호의 시방서란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제1호의 항목란중 "건축물의 인동간 거리"를 "인접건축물과의 거리"로,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동표 제2호의 항목란중 "복도 폭"을 "복도 너비"로, "출구 폭"을 "출구 너비"로 한다.

별표 6제3호의 표중 "띄는 거리"를 "띄우는 거리"로 하고, 제6호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8의 "계단 및 계단참의 폭"란을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란으로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의 6.건축규제계획란중 "용적율"을 "용적률"로 한다.

별표 12의 작성자란중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공사현장관리자"을 "현장관리인"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건축주명의변경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시행규칙"을 "건축법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중 "32 용적율"을 "32 용적률"로, "50 용적율(%)(기준포함)"을 "50 용적률(%)(기준포함)"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중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3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시공자"란을 "공사시공자"란으로 하고,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안내의 근거법규란 및 유의사항란중 "법"을 각각 "건축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를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7호서식중 "②사용검사일 년 월 일"을 "②사용승인일 년 월 일"로 하고, "건축주 또는 축조주"란을 "건축주"란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도지사등"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 "시장등"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축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제2항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②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사용검사대상"을 "사용승인대상"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시공자"를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④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⑤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중 "사용검사동의 대상"을"사용승인동의대상"으로, 동조 제3항 후단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한다.

⑥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제9호중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으로 하고, 동조제17항 본문중 "사용검사"를 각각 "사용승인"으로 한다.

⑦도·소매업진흥법시행규칙중 다음괴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한다.

〔별표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제6조제1항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 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인접건축물 현황
배 치 도	임 의	1. 축적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 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 면 도	임 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및 계단의 위치 5. 승강기의 위치
입 면 도	임 의	1. 2면이상의 입면계획 2. 외부 마감재료
단 면 도	임 의	1. 종·횡단면도 2. 건축물의 높이·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배 치 도 각층평면도 각층입면도 각층단면도	임 의	건축허가도면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경우와 건축허가도면의 변경이 있는 경우(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도면과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구조도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시 방 서	임 의	1. 시방내용(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함 2. 흙막이 공법 및 도면
실내마감도	임 의	1. 벽 및 반자의 마감의 종류
소방설비도	임 의	1.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해당 소방관련 설비
건축설비도	임 의	1.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토지굴착 및 옹벽도	임 의	1. 지하매설 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별표10〕

건축재료(제32조 관련)

1. 레디믹스드콘크리트
2.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3. 보통합판
4.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5. 옥내용 소형스위치
6. 배선용 꽂음접속기
7. 도어클로우저
8.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9. 수도꼭지
10. 철동밸브
11. 복층유리
12. 보주경첩
13. 배관용 탄소강관
14.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
15. 난방용 주철방열기
16. 난방용 강판방열기
17.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18. 경질 비닐 전선관
19. 강제 전선관
20. 프리텐션방식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21.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피시말뚝
22. 도자기질 타일
23. 가단 주철제관 이음쇠
24. 600볼트 비닐 절연전선
25. 보일러 및 교환기용 탄소강 강관
26. 플로어링 보드
27.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28. PVC(비닐)계 바닥재
29. 비닐 석면타일
30.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31.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외부용)
32. 광명단 조합페인트
33. 조합페인트
34.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및 담색
35.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내부용)

36.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37.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
38.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39. 투명라카
40. 우드실라트 콘크리트
41.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42. 알키드수지 바니쉬
43. 스파바니쉬
44. 슬레이트 및 기화용 페인트
45.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 광택에나멜
46. 형광램프(일반조명용)
47. 소켓
48. 배수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49. 강화유리
50. 일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51. 특수배관용 강제맛대기 용접식관 이음쇠
52. 배관용스테인레스강관
53. 스위치박스 방열기
54. 암면 단열재 제품
55. 유리면 보온재
56. 기름연소 온수보일러
57. 누전차단기
58. 배선용 차단기
59.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60. 나사식 강관제 관 이음쇠
61 . 이음매없는 동 및 동합금관
62. 주택용 분전반
63. 푸러쉬플레이트
64. 노오말밴드(경질 비닐 전선관용)
65. 박스(경질 비닐 전선관용)
66. 카아바나이프 스위치박스
67.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68. 볼밸브
69. 수도용 제수밸브
70. 주철밸브
71. 파이프행거
7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73. 일반구조용탄소강관
74. 일반구조용각형강관
75. 타티에폭시 수지도료
76. 벨로우즈형 신축관이음
77. 플러팅밸브
78.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79.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80.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8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82. 하이탱크용사이펀
83. 로탱크용 볼탭
84. 로탱크용 사이펀
85. 시멘트벽돌
86. 동 및 동합금 관이음쇠
87. 강관 용접식 플렌지
88. 플로어힌지
89. 난방용 알루미늄 방열기
90. 접합유리
91. 아우트레트 박스
92.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프레스 이음쇠
93. 폴리에틸렌 이음쇠
94. 동 및 동합금플레어 관이음쇠
95. 동합금 납땜 관이음쇠
96. 보통벽돌
97. 시멘트블록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규칙

개정 건축사법(1995. 1. 5공포, 1995. 7. 1 시행)에 의하여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가 국내 개설 건축사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임할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설계 및 감리 업무를 올해 1월부터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 협회에 위임된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 협회가 "외국 건축사 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규칙"을 제정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본 협회에 위탁된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① 본 협회 회장은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가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건축사면허 취득자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면허(자격)증 사본
2.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② 본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대장 및 업무수행신고 현황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5일 이내에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필증 재교부) 본 협회 회장은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가 신고필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신고) 본 협회 회장은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변경되어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대장 및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 보존기간)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대장 및 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대장-영구
2.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서-영구
3.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5년
4.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변경신고서-5년
5.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업무수행신고 현황대장-영구

제6조(수수료)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 신고 업무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사법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 및 신고필증 교부-2만원
2. 외국 건축사면허취득자의 신고필증 재교부-2천원

부 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